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517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11.1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6.05

홈페이지: 개설중
대표이메일: 개설중

그릴파이버(Grill5)

정보공개서

(주)제이에프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제이에프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20(논현동)

전화: 1688-2868 | 팩스 02-927-152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본부, 1688-286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제이에프씨	그릴파이브(Grill5) 외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20(논현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7.30	2021.08.01	나상균	1688-2868	02-927-1526
	법인등록번호	110111-7976024	사업자등록번호	601-87-0226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나상균	그릴파이브(Grill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20(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나상균	1688-2868	02-927-15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나상균/㈜바르다 김선생	바르다김선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20, 2층(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나상균	1800-1525	02-927-152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 (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그릴파이브(Grill5)” 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그릴파이브(Grill5)	
상 호	그릴파이브(Grill5) OO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42411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6,345,720	6,936,591	-596,842	19,452,989	-2,211,850	-1,059,400
2023년	4,500,847	6,204,148	-1,703,301	17,006,039	-737,186	-1,100,487
2024년	4,978,778	6,251,601	-1,272,822	12,933,806	561,502	424,506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매출액은 정확한 매출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나상균	대표이사	2008.01.04 ~ 2010.01.07	조스떡볶이 대표	업무 총괄
			2010.01.07 ~ 2011.09.20	JAWS FOOD 대표	
			2010.11.05. ~ 2021. 7. 29.	구. (주)조스푸드 대표이사	
			2021.07.30. ~ 현재	(주)제이에프씨 대표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 월 31 일	1	-	1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제이에프씨	조스떡볶이	2008.01.04.~현재	떡볶이전문점
	(주)제이에프씨	오케이치킨&피자	가맹사업 미개시	치킨/피자전문점
	(주)제이에프씨	클로버 커피	가맹사업 미개시	카페
특수관계인	(주)바르다김선생	바르다김선생	2014.02.10.~현재	김밥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록일자 2012.10.17.	등록번호 4102424110000	김경오	2022.10.17

- 당사는 위의 지식재산권을 소유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그릴파이브(Grill5)를 시작한 날: 가맹사업예정

2. 그릴파이브(Grill5)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조스푸드	그릴파이브(Grill5)	나상균	가맹사업 미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7길 20
(주)제이에프씨	그릴파이브(Grill5)	나상균	가맹사업 미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7길 20

3. 그릴파이브(Grill5) 업종

영업표지	업종	
그릴파이브(Grill5)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패스트푸드	버거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그릴파이브(Grill5)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2024	0	0	0	0	0	0

6. 그릴파이버(Grill5)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말
가맹본부	(주)제이에프씨	외식	조스떡볶이	2010010007 7	202/2	178/2	138/0
		외식	오케이 치킨&피자	20212588	0/1	0/1	0/0
		외식	클로버 커피 (Clover Coffee)	20215175	-	-	-
특수관계인	(주)바르다김선생	외식	바르다김선생	20140058	143/1	124/1	104/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해당없음						
서울		해당없음(5곳 미만)						
부산		해당없음(5곳 미만)						
대구		해당없음(5곳 미만)						
인천		해당없음(5곳 미만)						
광주		해당없음(5곳 미만)						
대전		해당없음(5곳 미만)						
울산		해당없음(5곳 미만)						
세종		해당없음(5곳 미만)						
경기		해당없음(5곳 미만)						
강원		해당없음(5곳 미만)						
충북		해당없음(5곳 미만)						
충남		해당없음(5곳 미만)						
전북		해당없음(5곳 미만)						
전남		해당없음(5곳 미만)						
경북		해당없음(5곳 미만)						
경남		해당없음(5곳 미만)						
제주		해당없음(5곳 미만)						

- 당사의 그릴파이버(Grill5) 브랜드는 2024년 가맹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직전사업년도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비공개)		
광고선전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매촉진비	(비공개)	(비공개)				

*당사의 브랜드 별 정확한 금액책정이 불가하여 총액을 기재합니다.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멀티채널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1599-8000

-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제이에프씨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가맹금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그릴파이브(Grill5)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8,7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시 일부 또는 전부	영업개시 후	
교육비	4,4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해지 시	교육시작 후	
SI 매뉴얼 제공비	3,300	계약 체결일	SI (Space Identity) 매뉴얼 제공 전	제공 후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 시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0,700
가맹비	11,000
교육비	4,400
SI(Space Identity) 매뉴얼 제공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종 류	지급 대상	49.69㎡ (15평형)기준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금액	면적3.3㎡당 금액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미정)	34,800	2,320	내부인테리어 계약금40% 중도금40% 잔금20%	공사/공급 및 발주전	
간판	가맹본부	12,100	807	구매계약시 완불		
주방기기	가맹본부	25,388	2,115	오픈14일전		
주방집기	가맹본부	2,067	172	오픈14일전		주방기기
가구	가맹본부	770	64	오픈14일전		
POS장비	협력업체	770	64	물품 공급 전		주방집기
DID	협력업체	2,200	183	물품 공급 전		
전화보증금	가맹본부	100	8	오픈14일전		가구
오픈준비물	가맹본부	1,650	137	오픈5일전		
합 계	-	55,055	4,587			POS장비

- 위 표의 금액은 가맹점 규모 및 매장 환경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15평일 경우를 3.3㎡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간판, 주방기기, 의자/탁자, POS, DID/CCTV, 기타공사, 오픈준비 물품 비용, 키오스크는 실제 평수에 따라 정률로 금액이 가감되지는 않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철거공사, 전면유리공사, 점포 외부공사, 메인상하수공사, 도시가스 공사(가스배관, 온수기), 소방,공조설비공사(급,배기, 소화기, 확산소화기, 소방전기, 스프링쿨러), 전기증설공사, 에어컨공사, 별도공사(음향기기, 릴호수, 추가 설치)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및 사항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수매장(할인점 등)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특수매장 임대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정하는 메뉴얼 및 설계 도면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3.3㎡당 금사십만원 [₩400,000/부가세별도]의 점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 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4)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만18세 이상일 것(미성연자 제외)
종업원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는 지정된 주문시스템 상의 필수품목(원부재료 등)의 제조원/판매원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필수품목(원부재료 등)의 내역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주문시스템을 통하여 알립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	매 익월 25일	미반환	소멸	
주방위생 점검용 CCTV 사용료	협력업체(미정)	25	매월 말일	미반환	후불	
해충박멸서비스	협력업체	38.5~77	지급당사자간 협의결정	미반환	후불	-
정수기사용료	협력업체(미정)	27.5~38.5				
POS사용료	협력업체	22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익월 10일	광고 전	광고 후	가맹계약서 기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전	교육 후	
리모델링 비용	공사업체	VII-1 참조	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공사 전	공사 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VII-1 참조 (공사견적-개설 기준 준용)	공사 진행 시 비용정산	공사 착공 전	공사 대금으로 사용된 비용	가맹계약서 기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시까지	-	후불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다른 간판변경비용은 가맹점의 규모, 간판의 재질, 변경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특수매장(할인점 등)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특수매장 임대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릴파이브(Grill5) 가맹점 운영을 점검하고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고객관리, 메뉴관리, 재고관리 등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그릴파이버(Grill5)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개점에 필요한 교육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당사는 양수자에게 시설의 노후나 내부 매뉴얼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9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나 인터넷 상의 사용)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철거와 관련하여서는 ‘철거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4.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여야 한다.
6.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그릴파이버(Grill5)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권장 품목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가맹본부가 알선한 업체가 아닌 타 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장 품목일지라도 지정된 주문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의 사양(제조원/판매원)과 유사 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해야 하며, 동일한 품목이 아닌 유사한 품목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수관계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는 그릴파이브(Grill5)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로 하여금 당사로 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용역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귀하에게 지정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의 니즈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공급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버거 패스트푸드	그릴파이브(Grill5)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계약서 제12조)	설정방법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별첨 2]와 같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이러한 입지선정의 최종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영업지역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계약 매장에서 보행로거리로 500m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도나 내용을 별첨한 경우는 별첨이 우선한다. '보행로거리'라 함은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자의 보행방법에 의한 거리로 보행자가 걸어서 측정된 거리를 말하며, 특급 상권 등에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 및 지하보도, 건물목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진다. ③ 전 항의 '영업지역'은 백화점, 극장 등 특수매장을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는 구역으로 가맹점의 배달영업 지역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 놀이동산 및 다중 이용시설(공항, 터미널, 역사 등) 등의 특수시설은 별개의 영업지역으로 하며 상호 포함하지 않는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한다.	가맹계약서 별지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변경 된 조건에 대한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데에 따르는 제한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해당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1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제13조 제9항에 규정된 가맹본부와 소비자가 CCTV를 통해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의 점검을 어렵게 하는 행위 6.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금전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신규, 정기,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합의하여 설정 및 조정한 영업지역 및 조건 또는 가맹본부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0.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1. 가맹본부로부터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2. 필수품목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3.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매뉴얼 및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가맹점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15.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6. 지정거래처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지 않는 경우 17. 가맹본부에 통지 없이 필수품목을 개별 구매하는 경우 18. 공급품을 상품판매 외 용도로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19. 매뉴얼 및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20.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1.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23.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4.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5.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26. 회계자료의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7.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변경을 한 경우 28. 영업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29. 기타 가맹계약의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1항 각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아래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38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8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8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8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8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8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8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8조 3항

-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25일 이내) → 계약 체결(7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1688-2868)

- 단, 양도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과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양수자에게 시설의 노후나 내부 메뉴얼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업무를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의 통지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대리행사	본부승인 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그릴파이버(Grill5)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버거 패스트푸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1688-286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그릴파이버(Grill5)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일 12시간이상)	연중 무휴	문의 : 당사 (1688-2868)

-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매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1개월 기준 20일 이상(일 8시간 이상)	가맹사업자 지정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위생	가맹본부 위생커미티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 지도 → 가맹사업자 확인 및 서명 → 평가표작성 → 불량가맹점 공지 → 수정 요청 → 완료	비정기적 (연 1~2회)	가맹본부	식품위생기준에 의한 평가
매장 순회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품질, 위생, 시설 및 본사 관련 기본 계약사항 이행 여부 확인) → 각종 행사 및 매출 증진 방안 논의	월/분기별 1회		매장 배포 매뉴얼에 의한 평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 지도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평가표 작성 → 불량 가맹점 공지 → 수정 요청 → 완료	비정기적 (연 1~2회)		
서비스 관리	서비스 평가 → 관리 지도 → 불량가맹점 공지 → 수정요청 → 완료	비정기적 (연 1~2회)		

-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재고를 위해 조리시설과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CCTV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CCTV설치 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CCTV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설치 조건 및 공개경로

① CCTV 사양 및 설치 위치

- (화소) HD 400만 화소 등급 혹은 그 이상
- (위치) 조리실 내부 전체 및 조리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② 주방 내부 CCTV화면 공개 경로

- (1차 경로) 당사가 지정한 홈페이지, APP
- (2차 경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그릴파이브(Grill5)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의 2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 전액부담				월별 판촉 행사

-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당사의 계획, 주관하는 이동통신 제휴, 신용카드 제휴 등과 같은 각종 제휴 행사진행 시 귀하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귀하는 이에 협조하여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단, 참여의사가 없을 시 귀하는 당사에게 사전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업체 제휴 행사진행 시 제휴 업체와 당사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협의 절차
광고	광고안 본사 서면 제출 → 광고안 본사 검토 (7일) → 수정 및 승인여부 결정 통보 (7일)
판촉	판촉안 본사 서면 제출 → 판촉안 본사 검토 (7일) → 수정 및 승인여부 결정 통보 (7일)
1. 광고, 판촉 시 제출서류 : 광고, 판촉 목적 및 내용, 제작물 이미지 2. 사전 점검사항 : 로고 및 상표 사용, 광고 판촉 지역, 현진행중인 행사와의 중복 관계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40조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으로 금 삼천만원【₩ 30,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9조 1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본 계약에서 명시한 매장규모의 3.3㎡당 금 일만원【₩10,000】으로 산출한 금액【지체[침해]일수×매장규모(3.3㎡당)×₩ 10,000】을 지연배상 예정액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정당한 해지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중도 계약해지 및 폐점을 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때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장규모의 3.3㎡당 금 오만원으로 1일마다 산출한 금액【계약 잔여월수×매장규모(3.3㎡당)×₩ 50,000】을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경업금지 등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42조 제3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그	제42조 제4항

손해를 배상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제5항
상기 위약금 이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제6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2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1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2~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1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41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0~37(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6(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2~4(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금액과 지불하는 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다.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가맹점 요청 시	가맹계약 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그릴파이버(Grill5)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실시주요내용
대상	신규(양도양수) 오픈 가맹점
교육시간	본사소집 40 시간(5 일) 직영점 실습 40 시간(5 일)
주요내용	블랜디드 러닝(본사소집 전 스마트 러닝 필수 수료) 본사이념 프랜차이즈 시스템 경영자 마인드 노무 . 세무 고객응대(접객 서비스, 클레임 응대법) 조리이론 및 실습 마케팅 . 영업 전략 점포 오퍼레이션
교육방식	스마트러닝 + 본사소집 + 직영점실습
기한	최초 계약 시 이수
비고	필수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그릴파이버(Grill5)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기	최초 계약시 이수	매년 1 회(재계약 전)	수시
교육대상	신규(양도양수) 오픈 가맹점	전 가맹점	매출 부진점 QSC 평가 부진점 고객클레임 다수 발생점
교육시간	본사소집 40시간(5일) 직영점 실습 40시간(5일)	4 시간	4 시간 * 횟수
교육내용	(본사소집 전 스마트 러닝 필수 수료) 본사 이념 프랜차이즈 시스템 경영자 마인드 노무, 세무 고객응대(접객 서비스, 클레임 응대법) 조리이론 및 실습 마케팅 . 영업 전략 점포 오퍼레이션	경영방침 서비스전략 영업활성화	영업 활성화 서비스 마인드 함양 취약점 강화교육
비용[부가세 별도]	기본[2 인 이하] 4,000,000 원/ 추가[1인당] 500,000원	진행시 별도 통지 예정	실비 또는 1 인당 100,000 원
비고	최초계약 시 이수	필수	필수

- 교육이수는 세부사항에 따라 최소시간 및 비용이 달라지며, 내용확정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직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이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2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와 교육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규정
신규 교육	불참 시 개점지연 및 계약해지
정기 교육	불참 시 각종 지원혜택 제외, 계약갱신 거절
보수 교육	불참 시 각종 지원혜택 제외, 계약갱신 거절
e 러닝 교육	불참 시 각종 지원혜택 제외 및 집체교육 실시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688-28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44-200-4233~35)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리스트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월일점CHECKLIS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제이에프씨
	성명(대표자)	나상균
	주소(사무소)	
예치가맹금		₩(금원정)
신청인의계좌		
가맹본부의계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6조의5제1항,같은법시행령제5조의7제2항에따라위와같이가맹금을예치하여줄것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예치기관의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